

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 심사보고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6. 3. 26 화 순 군 수
- 나. 회 부 일 자 : '96. 4. 3
- 다. 상 정 일 자 : '96. 4. 29 (제44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 안 설 명 자 :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

나. 제 안 이 유

- '96. 2. 21 나주시에서 개최된 '96 상반기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에서 논의 결정된 사항 및 기구개편에 따른 담당부서 변경으로 관련규정 개정코자함.

다. 주요내용

- 회장의 임기 2년 → 1년
- 의회 추천 자문위원 임기 신설
의회 추천 자문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
- 행정협의회 운영담당부서 변경
기획실장 → 기획실장 또는 광역행정업무 담당부서의 장
※ 우리군 → 경영정책실장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김재휴)

- 본 규약개정안은 '96. 2. 21 나주시에서 개최된 '96년 상반기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에서 논의 결정된 내용 및 기구개편에 따른 담당부서 변경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답변 요지

" 생 략 "

5. 토 론 요 지

“ 생 략 ”

6. 심 사 결 과

「원안가결」

7. 첨 부 :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

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6. 3.

제출자 : 화순군수

1. 제안이유

- '96 상반기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구성 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, 회장의 임기는 단축하고 의회추천 자문위원 임기를 신설하며 기구개편으로 담당부서가 변경되어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 일부를 개정코자 함.

2.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
- 나주기획 13109-191 ('96. 2. 21)

3. 주요골자

- 협의회운영규약 일부 개정
 - . 회장임기 : 2년 → 1년 ('95. 7. 1부터 기산)
 - . 의회추천 자문위원의 임기신설 :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
 - . 기구개편으로 인한 담당부서 변경 : 기획실장 또는 광역행정 업무담당 부서의 장

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

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3항중 "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"를 "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"로 한다.

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제1항의 자문위원의 임기는 의회에서 추천한 자문위원의 경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수시 위촉하는 자문위원은 당해 협의안건 의결과 동시에 자동 해촉한다.

제9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14조 제2항 및 제4항중 "기획실장(기획담당관)"을 "기획실장 또는 광역행정업무 담당부서의 장"으로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최초회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회장의 임기는 1995년 7월 1일부터 개시된 것으로 본다.

신.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
<p>제7조 (회장) ① 생략</p> <p>② 생략</p> <p>③ 회장의 임기는 <u>2년으로 한다.</u></p> <p>④ 생략</p>	<p>제7조 (회장) ① <u>현행과 같음.</u></p> <p>② <u>현행과 같음.</u></p> <p>③ - - - - - 1년으로 - - .</p> <p>④ <u>현행과 같음.</u></p>
<p>제8조 (자문위원) ① 생략</p> <p>② <u>수시 위촉하는 자문위원은 당해 협의안건 의결과 동시에 자동해촉된다.</u></p>	<p>제8조 (자문위원) ① <u>현행과 같음.</u></p> <p>② 제1항의 자문위원의 임기는 의회에서 추천한 자문위원의 경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수시 위촉하는 자문위원은 당해 협의안건 의결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.</p>
<p>제9조 (간사) ① 간사장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<u>기획실장(기획담당관)</u>이 되며, 회장의 명을 받아 회 운영의 기록관리 등 제반업무를 담당한다.</p> <p>② 간사는 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<u>기획실장(기획담당관)</u>이 되며, 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.</p>	<p>제9조 (간사) ① - - - - - - - - - - 기획실장 또는 광역행정 업무담당부서의 장 - - - - - - - - - - - - -</p> <p>② - - - - - 기획실장 또는 광역행정 업무담당부서의 장 - - - - -</p>
<p>제14조 (실무협의회) ① 생략</p> <p>② 실무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<u>기획실장(기획담당관)</u>과 - - - - - - - - - - .</p> <p>③ 생략</p> <p>④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<u>기획실장(기획담당관)</u>이 된다.</p>	<p>제14조 (실무협의회) ① <u>현행과 같음.</u></p> <p>② 실무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실장 또는 광역행정 업무담당부서의 장 - - - - -</p> <p>③ <u>현행과 같음.</u></p> <p>④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실장 또는 광역행정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.</p>